

광주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가단5066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문병욱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D 사이에 전남 담양군 E 임야 4,8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5,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29.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F 등1)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3,123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4. 16.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사이에 D 등2) 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합계 6,01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원고의 위와 같은 송금거래를 ‘이
사건 송금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8. 7. F으로부터 각서인을 D, F(이들은 부부 사이이다)으로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징구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F만 서명을 하였다.

차용증

일금 : 5,600만 원을 2019. 8. 7. 차용하여 변제일은 2019. 8. 9. 3,000만 원을 일부 변
제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전남 담양군 G 건물 철거 후 PF 대출이 실행과 동시
에 변제하거나 이 사건 임야에서 돈(매각대금)이 수령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단, 약속이 늦어질 경우 2019. 12. 30.까지 모든 금액을 변제하겠습니다.

2019. 8. 7.

각서인 D F

각서인 F

다. 한편, D은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2021. 6. 3. 피고들에게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7. 1.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은 이 사건 임야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M조합(근저당권자)에 대하여 407,167,888원, ② N(근저당권자)에 대하여 6억

7,000만 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압류권자)에 대하여 7,969,240원, ④

근로복지공단(가압류권자)에 대해 8,353,110원, ⑤ O(가압류권자)에 대하여 2,000만 원, ⑥ 국세
등 체납액 35,556,230원 등 합계 1,149,046,468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7, 을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담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지적전산자료조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D에 대해 5,6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이 사건 송금거래에 따른 차액은
7,113만 원(= 1억 3,123만 원 - 6,010만 원)이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5,6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함],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들에게
매각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인 5,6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각서인이 D, F으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에 의해 작성되었고 F만 각서인들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을 뿐, 위 차용증에
D의 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지 않았다(을2,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면 참조). 또한 F과 D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F이 D으로부터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거나 이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차용증 작성행위가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F이 D을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송금거래 가운데 일부 금원은 원고와 D
명의로 계좌 사이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송금거래 사실만으로 D이

원고로부터 그 송금액 상당을 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원고가 F이 아닌 D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피보전채권의 흠결), 원고가 D이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채권자취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가액배상 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이 흠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가액배상 청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해행위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1) 주로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외에 H(3회, 623만 원), I(2회, 1,000만 원), J(2회, 1,000만 원), K(1회, 500만 원), 한전(D)(2회, 550만 원), L(1회, 50만 원), D(1회, 500만 원)의 계좌로도 송금하였다.

2) 주로는 D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을 받았고, F(2회, 550만 원) 명의의 계좌에서도 송금을 받았다.